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준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2.

발 의 자 : 김준혁 · 전용기 · 이정문
박범계 · 조승래 · 이주희
김남희 · 김문수 · 염태영
서영석 · 이춘석 · 임미애
송옥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·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, 예외적으로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증가하는 세대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.

한편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은 공공 주도로 기존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행 결과 세대 수가 증

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.

이에,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,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용지의 확보 및 증축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조 제2호커목 및 제5조제1항제1호 신설).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커.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,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·개발·확보, 경비의 부담 및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

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·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(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개발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·개발하거나 공동주택(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~ 저. (생 략)	가. ~ 저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커.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5조(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 시·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(이하	제5조(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

이 조에서 “공동주택분양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1. ~ 6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-----.

-----.

1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 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

2. ~ 7. (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